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51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리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지자체가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 등의 구체적 명시(안 제6조)
- 나. 지자체가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한 명시(안 제6조2)
- 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근거 명시(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10.6. ~ 2022.10.26.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3)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18조에 따라 성북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6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법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정적 지원) ①·② (생략)	제6조(재정적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18조에 따라 성북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u> <u>2. 관서운영 기본경비</u> <u>3. 사무시설 임차료</u> <u>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u>
<u><신 설></u>	<u>제6조의2(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u>
<u><신 설></u>	<u>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법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방법
 - 비용추계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를 반영
- 세출내역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7명에 대한 구비 지원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세입							
	소계(a)						
세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169,838	171,536	173,251	174,984	176,733	866,342
	소계(b)	169,838	171,536	173,251	174,984	176,733	866,342
□ 총 비용(a-b)		169,838	171,536	173,251	174,984	176,733	866,34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합계
국비						
시비						
구비	169,838	171,536	173,251	174,984	176,733	866,342
민간						
기타						
합계	169,838	171,536	173,251	174,984	176,733	866,342

5. 덧붙이는 의견 : 매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동 가능

6. 작성자 : 교육지원과 홍지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22년 1년차 예산 169,838천원)

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성북구체육회 운영비 : 6,000천원×4분기 = 24,000천원
- 성북구체육회 인건비 (행정요원) : 1,600천원×12월 = 19,200천원
 - ※ 인건비 월 2,800천원 중 1,200천원 서울시체육회가 보조
-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 126,638천원
 - 620,700원*17명*12월 = 126,638천원(구비) 편성(1년 인건비의 25%)
 - 총 506,549천원 = 국50:시25:구25
 - ※ 1인당 인건비(월 기본액) : 2,483천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